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9. 화 순 군 수
- 나. 회 부 일 자 : '96. 9. 6
- 다. 상 정 일 자 : '96. 9. 17(제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자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나. 제 안 사 유

-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개정되어 장학기금을 주민 및 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모금이 금지됨에 따라 장학기금조성 계획을 조정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학생선발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다수의 유능한 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장학기금은 군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안 제4조)
 - .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조항 삭제
- 장학생의 자격세분화 (안 제12조)
 - . 현 행 :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
 - . 개 정
 - 일반고등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 학년 학생의 100분의 20이내
 - 실업계 고등학생 → 100분의 5이내
 - 특수목적 고등학생 → 100분의 50이내
 - 대학생 → 전체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
- 수석합격자 격려금 지급 (안 제12조 제3항)
 - . 현 행 : 각 대학 입학시험 전체수석
 - . 개 정 : 4년제 이상의 각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 수석

○ 장학생의 선발기준 (안 제15조 후단 신설)

- 현 행 : 당해년도 운영기금 범위내에서 선발 추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개 정 : 화순군 관내의 학교별 선발인원은 재학중인 학생수를 기준
으로 형평 유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휴)

- 동 조례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기금조성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장학기금조성계획
을 조정하고
-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제
업무 운영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7. 첨 부 :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9. 4.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화순군조례제1396호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화순군규칙 제825호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거 장학사업의 경영정책실 이관으로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

2. 개정근거

-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화순군 조례 제1396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화순군 규칙 제825호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3. 주요골자

- 장학적립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안 제4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법률 제5126호)에 의거 기탁금을 장학적립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어 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장학적립기금을 조성코자 함.
- 장학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7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거 경영정책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고 새마을과장은 직제가 폐지되어 삭제하고 경찰서 보안과장 직제개정으로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간사의 변경 (안 제11조)
사무의 이관으로 내무과 서무계장을 경영정책실 정책개발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장학생의 자격 규정 (안 제12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 성적우수자로 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로 하며 대학생은 평균성적이 B학점이상으로 자격을 규정함.

○ 수석합격자 격려금 지급 (안 제12조 제3항)

4년제이상의 각 대학 입학시험 전체 및 단과대 수석합격자에게 격려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학생 선발 (안 제15조)

관내 고교별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형평을 유지토록 규정함.

○ 장학금 지급 방법 규정 (안 제17조)

장학금은 매반기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 기금운용의 규정 (안 제21조)

장학금 및 수석합격자 격려금, 기능, 예체능분야 도단위대회이상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안 제22조)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

○ 장학기금 조성계획 변경 (안 제4조 제4항)

'97년 이후 군 출연금을 350,000천원으로 변경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중 “주민성금”을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중 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4항중 “별표”를 별지의 “별표”와 같이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군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내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방범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한 인사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제2항중 “서무계장”을 “정책개발계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1호중 “해당한 자”를 “해당하는 고등학생, 단 실업계 고등학생은 100분의 5이내,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한 자”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2호를 3호로 하고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체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해당하는 대학생

제12조 제3항중 “각대학”을 “4년제 이상의 각대학”으로 하고 “전체 수석”을 “전체 또는 단과대 수석”으로 한다.

제13조중 제목 “지원”을 “지원신청”으로 하고, “첨부하여” 다음에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를 삽입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단, 화순군 관내의 학교별 선발인원은 재적중인 학생수를 기준으로 형평을 유지 하도록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매반기별로 지급한다.

제21조 제2항중 3호를 5호로 하고 3,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4년제이상의 각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체 또는 단과대학 수석학생에 대한 격려금
4. 기능, 체육, 예능분야중 도단위대회 이상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 분	계	'92	'93	'94	'95	'96	'97	'98
	계	1,000,000	70,000	75,000	135,000	160,000	210,000	150,000
화순군 출연금	850,000	50,000	50,000	100,000	150,000	150,000	150,000	200,000
기탁금 및 기 타	150,000	20,000	25,000	35,000	10,000	60,000		

(별지제1호서식)

화순군 장학금 신청서

①성 명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⑤ 사 진 3.5×5 (cm)
		-	
③현 주소	(통 반)		
④재적학교	학 (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직 업	⑨주 소	⑩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첨부 1. 성적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전학년석차		평균성적(평점)	
-------	--	----------	--

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화 순 군 수 귀 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장학진흥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진흥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p> <p>3. "장학진흥운동기금" (이하 "운동기금"이라 함은 장학사업 운영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수입금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동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p> <p>제4조(장학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군 출연금</p> <p>2.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p> <p>3. 기타수입금</p> <p>제7조(구성)</p> <p>③ 위원은 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경찰서 보안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한 인사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장학진흥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진흥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p> <p>3. "장학진흥운동기금" (이하 "운동기금"이라 함은 장학사업 운영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기타수입금, 각기금(적립기금 및 운동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p> <p>제4조(장학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제7조(구성)</p> <p>③ 위원은 군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내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방범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분야를 대표한 인사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p>

현행	개정
<p>제1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u>고등 학생</u> 경우 매분기별로 <u>대학생의 경우</u> 매반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p> <p>제21조 (기금의 운용) <신설></p> <p>3.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u>군수가</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p> <p>제22조 ① <u>군수는</u> 기금의 수입지출에 <u>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u> 둔다.</p> <p>② 제1항의 <u>기금출납명령관을</u> <u>기금</u> 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고 <u>기금출납</u> <u>공무원</u>은 기금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p>	<p>을 유지하도록 한다.</p> <p>제17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매반기 <u>별로</u> 지급한다.</p> <p>제21조 (기금의 운용)</p> <p>3. 4년제 이상의 각 대학입학시험에 <u>서 전체 또는 단과대학 수석학생에</u> <u>대한 격려금</u></p> <p>4. 기능, 체육, 예능분야중 도단위 <u>대회 이상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u></p> <p>5. (현행과 같음)</p> <p>제22조 ① - - - - - <u>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u> - - - - - - - - - - .</p> <p>② - - - - <u>기금운용관</u> - - - - - - - - - - <u>기금출납원</u> - - - - - - - - - - .</p>

< 현행 >
[별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계	'92	'93	'94	'95	'96	'97이후
	계	1,000,000	100,000	100,000	150,000	200,000	200,000
화순군 출연금	750,000	50,000	50,000	100,000	150,000	150,000	250,000
조성계획 (기탁금)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개정안>
[별 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계	'92	'93	'94	'95	'96	'97	'98
계	1,000,000	70,000	75,000	135,000	160,000	210,000	150,000	200,000
화순군 출연금	850,000	50,000	50,000	100,000	150,000	150,000	150,000	200,000
기탁금 및 기타	150,000	20,000	25,000	35,000	210,000	60,000		

<개정안>
(별지제1호서식)

화순군 장학금 신청서

①성 명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⑤ 사 진 3.5×5 (cm)
		-	
③현 주소	(통 반)		
④재적학교	학 (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직 업	⑨주 소	⑩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첨부 1. 성적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성명

인

전학년석차	평균성적 (평점)
-------	-----------

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화 순 군 수 귀 하